

의안번호	2213584
의 회 인	오세희 의원
회 답 일	2025. 11. 5.
추계번호	25A5590
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6조제2항 (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)	산업통상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<u>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사업자단체</u>로 하여금 가스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.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<u>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사업자단체</u>에 대하여 안전관리 조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함 ※ 현행: 한국가스안전공사 개정안: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사업자단체	재량규정
2	안 제47조제2항 (액화석유가스 소형 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의 지원)	산업통상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<u>사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</u>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※ 현행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개정안: 사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46조제2항 (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47조제2항 (액화석유가스 소형 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의 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가스 안전 관리의 주체와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·배관망 설치 사업의 수행 주체를 사업자단체¹⁾로 확대하고,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
 - 현행법에서 가스 안전관리의 주체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,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·배관망 설치 사업의 수행 주체는 대통령령²⁾에 따라 해당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기술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으로 정하고 있음
 - 개정안에 따라 가스 안전관리 주체와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·배관망 설치 주체를 확대하고 소요 비용을 지원할 경우 기존 사업이 확대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
 - 현재 산업통상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가스 안전관리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며 사업 비용을 출연하고 있음
 - 또한, 산업통상부는 한국LPG산업협회와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·배관망 보급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며 관련 비용을 보조하고 있음
- * [참고자료] 가스 안전관리 및 액화석유가스 시설개선 관련 사업 현황

1)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

제50조(사업자단체의 설립)

-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5조·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별로 사업자단체(이하 "사업자단체"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- ②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. <후략>

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」

제22조(사업자단체의 설립)

-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(이하 "사업자단체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설립할 수 있다.
 - 1.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단체
 - 2.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단체
 - 3.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단체
 - 4.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단체
 - 5.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단체
 - 6.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단체

2)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」

제19조의2(지원기관의 지정 등)

-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설립 목적 또는 사업 목적에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것
 - 2.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을 것
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사항을 고시해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관의 지정,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-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가스 안전관리와 액화석유가스 시설개선 사업 등의 주체를 확대할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, 개정안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가스 안전관리 사업과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·배관망 설치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,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자단체에 소요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현행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소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현행 사업의 예산 증액 규모가 될 것이나, 현 시점에서 확대될 사업 규모와 정부의 재원 투입 계획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박선아	권아영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선아	02-6788-4652	sunapark@nabo.go.kr

[참고자료] 가스안전관리 및 액화석유가스 시설개선 관련 사업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-내역사업 (회계, 코드)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2025년 예산
LPG용기사용가수 시설개선 (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, 5143-311)	□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○ LPG 사용가구에 금속배관을 설치하고 안전기기(퓨즈콕)을 보급하는 사업	3,203
한국가스안전공사 지원 (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, 5143-301)	□ 가스안전관리 및 노후 가스배관 점검·개선 사업 ○ 가스시설 검사, 지능형 가스충전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, 노후 가스배관 누출탐지 장비 도입 등 가스안전과 관련한 사업의 시행주체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수지차 보전 형식의 예산 지원	93,021
가스안전관리(용자) (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, 5143-301)	□ 가스유통구조 및 노후 가스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○ LPG충전사업자, LPG판매사업자, 집단공급사업자,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, 수입사, 도시가스사업자, 전문검사기관에게 연 5억원 이내로 노후 가스시설 개선을 지원	3,522
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(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, 5443-304)	□ 사회복지시설과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마을에 LPG 저장탱크, 공급배관, 사용자 시설 등 LPG 공급체계 구축 지원 ○ 한국LPG산업협회와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컨소시엄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민간자본보조(보조율 80%, 사회복지시설의 경우), 민간경상보조(보조율 100%, 마을의 경우)의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	7,635

자료: 산업통상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